

#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인제 위원장님!

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3선거구 출신 임만균 위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이 조례안은,

시·구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구분하여 명시하고,

구 건축안전센터가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

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,

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수행을 위한 조사·점검비에

건축안전특별회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포함하여

노후건축물 안전관리업무의 체계적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□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잘 살피 심의해주실 것을

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